

■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4. 3.>

##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영문)		
	현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여권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희망허가기간				
여행 목적	여행 국가			
	신청인은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 )호에 해당합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하 "여권사용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 예정사항			
	성명	관계		
	국내 긴급 연락처	직장(학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뒤 쪽)

1.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를 포함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1) 재직증명서
-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 해외거주 중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주소	
	입국일자	체류자격
영주권 (거주증)	번호	취득일자
구여권	번호	발급일자
가족사항		